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서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8
권데릭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8
권다니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8
권엘리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18
노예전	2007.**.**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9.18
김찬우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9.18
천월승인	2002.**.**	남성	일본	강원도 영월군 ****	2020.09.18
박시은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8
박성은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18
이유성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0.09.18
차송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차원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차현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지수영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9.18
염상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18
염운서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18
오요한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8

● 환경부고시제2020-202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환경부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과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성 표시·광고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정 광고·표시행위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조사 및 수사,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를 포함함)
3.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신고한 자가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9.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10.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별 해당 분기에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거나 고발이 이뤄진 신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어느 신고자가 우선하여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대상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부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 등 환경성 표시·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녹색산업혁신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
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6524	순수함은 없는 결혼	밀혜혜	주)동아	2020-08-13	간행물윤리위원회	2011235	2020-09-11	선정성	2020-10-05
2020-6525	신데렐라는 과연 행복했을까	연(蓮)	페리윙클	2020-08-12	간행물윤리위원회	2011236	2020-09-11	선정성	2020-10-05
2020-6526	연회동, 러브레터	박영	주)마야 마루출판사	2020-06-19	간행물윤리위원회	2011237	2020-09-11	선정성	2020-10-05
2020-6527	침대 속 우정	제시카 레몬/ 권수미	주)신영미디어	2020-08-10	간행물윤리위원회	2011238	2020-09-11	선정성	2020-10-05
2020-6528	彌生みづき 寫眞集 LOVE, LOVE, LOVE	14y.ムラミツ	ロングランドジェイ/ 에스이집사	2020-07-27	간행물윤리위원회	2020733	2020-09-11	선정성 ※표지포함	2020-10-12
2020-6529	封印映像 灼熱@お宝大開 放スペシャル		コスミック出版/ 동남도서 주식회사	2020-07-29	간행물윤리위원회	2020734	2020-09-11	선정성 불건전교체 조장	2020-10-12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6530	그 이름을 너는 모른다	Suzu shinomiya/김	주)현대지능개발사	2020-09-10	간행물윤리위원회	2011274	2020-09-11	선정성	2020-10-05